

3.1.14 산학협력위원회규정

제정 1997. 05. 01.

개정 2009. 09. 0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교의 설립취지에 입각하여 지역사회의 교육적 수요의 충족과 지역사회발전에 필요한 산·학간의 제반문제를 협의하고, 기술인력과 시설을 공동활용하며 상호정보 교환 및 지원을 통한 지역산업사회와 대학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본 위원회의 명칭은 초당대학교 산학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하고, 위원회의 사무소는 본 대학교 산학협력부에 둔다.

제3조(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30인 이내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총장, 산학협력단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복지처장,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대학원장, 중소기업산학연센터장, 산학협력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기타 대학교측의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2. 본 대학교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는 업체의 장
3. 각 학과별 산학협력위원회의 산업체측의 위원장
4. 지역사회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장 또는 업체의 장 중에서 총장이 별도로 위촉하는 인사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협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학간의 연계체제 확립
2.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
3.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개발
4. 교수, 학생 현장연구 및 실습지도
5. 산업체 인사의 강사활용
6. 산·학간의 정보교환 및 취업지도
7. 산·학간의 시설활용에 관한 사항
8. 기타 산업대학교 운영 및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하부조직)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학과별로 두되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7조(임원) 위원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1인
3. 간사 1인

제8조(임원의 선임) ① 위원장은 본 대학교 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업체측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간사는 본 대학교 산학협력부장이 된다.

제9조(임원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산업체측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제10조(회의진행) 위원회의 개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하며 의결은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1조(협의사항 통보)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